

Focus 2

중국의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조치 내용과 시사점

◆ 주요 내용

중국상무부와 세관은 가공무역 제한품목 리스트를 신규 발표하고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2007년 8월 23일부터 시행

제한품목 가공무역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보증금제도를 실시

-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원자재 수입 시 세관이 정한 은행구좌에 납부해야 하며 수출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 보증금과 은행이자를 반환받음

A, B류 업체에서 납부하는 보증금의 계산방법

(1) 수입제한 품목

$$= (\quad + \quad) \times 50\%$$

(2) 수출제한 품목

$$= \quad \times (\quad / \text{가}) \times 50\%$$

(3) 수입시 원자재가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되고 가공 후 완성품이 수출제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가공업체가 납부하는 보증금의 계산방식은 수입제한 품목의 보증금 계산방식(1)과 같음

- 경영업체와 가공업체가 모두 중서부지역에 소재하며 제한품목의 가공무역을 취급할 경우 A, B류 업체의 보증금은 空轉방식으로 관리하고 C류 업체의 보증금은 100% 實轉방식으로 관리

* 實轉 : 보증금대장제도의 운용상 관세와 증치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중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장 제출 필요

* 空轉 : 단지 보증금대장에 기록만 하고 현금 또는 보증장이 불필요한 경우

제한류 품목에 대하여 가공무역을 신청하는 업체는 제한류 품목임을 표기하는 외에 제한품목의 2차가공 상황도 표기하여 함

신규 제한품목(1,853개)와 기존 제한품목(395개) 모두의 가공무역에 대하여는 과도기적 관리를 실시

- 2007년 8월 23일전에 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세관에 신청한 가공무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계약별 관리방식의 가공무역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기업별 관리방식의 가공무역은 2008년 8월 23일 이전까지 기존의 규정을 적용함
- 2007년 8월 23일부터는 8월 23일 이전에 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았으나 세관에 신청하지 않은 <가공무역업무허가증(加工貿易業務批准証)>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가공무역업체는 반드시 상무주관부서에 신규 허가를 받고 세관은 본 공고내용에 따라 가공무역업무를 수리함

2007년 7월 23일 전에 대외무역 경영권을 획득하지 못한 동부지역 기업에 대하여 제한품목의 가공무역 경영권을 발급하지 않음

- 다만, 기존에 가공무역 수탁 받았으나 대외무역경영권이 보유하지 않은 동부지역 소재 기업은 2007년 10월 23일전에 소재지 상무주관부서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아 규정된 기간내에 대외무역경영권을 획득하거나 기업의 구조조정, 인수합병 등 원인으로 회사명은 변경되었지만 지분구조 및 법인대표를 변경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본 공고에서 지정한 중서부지역은 북경, 천진, 상해, 요녕, 하북, 산둥, 강소, 절강, 복건, 광둥 등 동부지역 10개 성/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을 의미함

수출가공구, 보세구 등 세관의 특별관리를 받는 구역과 중국내에서 2차가공을 위해 수입제한 품목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가공무역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

◆ 시사점

중국의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조치 목적은 무역수지 흑자를 축소하고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음

- 중국의 高에너지, 高오염, 자원제품, 부가가가 낮고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여 수출상품구조를 최적화하고 무역흑자 축소를 통한 통상마찰 완화 모색
- 금번 신규 발표한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총 1,853개에 달하며 주로 플라스틱, 가구, 섬유 등 노동집약형 제품임
- 이번 조치는 2006년 11월 22일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추가로 804개 확대하고 지난 7월 1일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하한데 이어 나온 중요한 가공무역 정책의 변화임
- 또한, 중국정부는 이번에 지역별 차등정책을 실시하여 중서부지역의 대외개방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 함

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조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

- 최근 중국의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, 위안화 평가절상,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,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 등으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
- 한국의 경우 중국진출 기업의 70%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가공무역 제한품목으로 지정되면 관련기업들은 보증금 납부로 업체들의 자금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
 - 일부 기관에서는 이번 가공무역 제한품목 확대로 최고 30%정도의 추가 원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전망

향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시 중국의 정책변화를 예측, 투자전략의 변화 필요

- 또한,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경영환경 및 산업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걸 맞는 내수시장 공략 등 투자전략을 수립
- 임가공의 경우 투자비용과 인건비가 낮은 중서부지역을 동부지역의 투자대체지로 선정하여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함(금번 조치는 중서부지역에 적용하지 않음)
 - 현재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대부분이 인건비가 높은 동부지역에 집중
 - 한국기업은 대중국 투자 1억 달러당 783명을 고용, 일본기업의 383명보다 약 2배정도 많아 인건비의 의존도가 높음
- 중국진출 시 단순 가공생산 보다는 기술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하여 내수시장 공략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.